

● 政策解説 ●

原子力發電對策 協議機構의 必要性

On the Neccessity of a
Cooperative Committee
for Nuclear Power
Projects

金世鍾

動力資源部 原子力發電課長

1978年 4月 우리나라最初의 原子力發電所인 古里 1號機가 竣工되었다. 그리고 今年 4月이면 月城 1號機가 竣工되고 또한 6月이면 古里 2號機가 竣工되게 되어 우리나라의 總原子力發電設備는 192萬kW에 達하게 되며, 全體發電設備中에서 原子力發電이 차지하는 比重은 14.6%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原子力發電의 比重은 1986年에 가서는 27.1%로 1991年에는 40%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原子力發電의 比重이 이와같이 繼續增加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우리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原子力發電量

이 늘어나는 것만큼 石油의 消費量을 출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原子力發電의 電力生產原價가 石油火力의 그것보다 低廉하기 때문에 그만큼 電力生產原價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效果를 밀기 때문에 原子力發電所를 繼續해서 더 많이 建設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效果는 우리가 原子力發電所를 보다 安全하게 그리고 보다 經濟的으로 建設, 運營할 때에 비로소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을 銘心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安全하고 經濟的으로 原子力發電所를 建設, 運營할 수 있을까.

原子力發電事業은 高度의 綜合技述產業이다. 이는 安全性의 確保를 絶對要件으로 하여, 莫大한 資財源을 必要로 한다.

때문에 最初의 建設計劃 段階로 부터 基本設計過程, 數많은 部品을 製作, 加工, 組立하는 機資材의 生產, 製作過程, 各種 施設을 設置하는 建設施工過程 그리고 複雜한 設備를 運轉, 維持, 補修하는 過程에 이르기까지 高度의 專門技術과 熟練을 必要로 하여 徹底한 品質管理를 通한 品質의 保障과 原價節減의 努力を 持續的으로 競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一連의 過程은 어느 한 企業이나 集團만의 努力에 依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電力會社는 勿論이려니와 數많은 機資材製作業體와 建設施工業體 및 技術用役業體가 參與하여야 하고, 研究機關과 學界의 支援을 必要로 한다. 그리고 이에 關한 政策을 全般的으로 統轄하는 政府關係部處가 參與하게 된다. 에너지政策과 原子力發電所 建設, 運營을 主管하고 있는 動力資源部, 原子力發電所의 安全性을 다루고 있는 科學技術處, 機資材의 生產, 製作을 管掌하고 있는 商工部를 비롯해서 資財源의 調達, 技術人力의 養成確保 그리고 環境保全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한 政府部處의 支援을 必要로 한다.

原子力發電事業은 이러한 모든 分野 即, 政府, 電力會社, 製造業體, 建設施工業體, 研究所 및 學界等의 參與와 一致된 努力 그리고 一般國民의 支持의 바탕 위에서 成就되는 協力体制의 所產인 것이다.

따라서 이 中에서 어느 한 分野라도 소홀히 다루

어질 경우에는 그것은 곧 安全性을 희생하거나 經濟性을 低下시키는結果를招來하기 때문에 어느 한 分野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더우기 安全性과 經濟性은 마치 天平 위의 양측의 關係와도 같이 서로相反되는關係에 놓여 있기 때문에兩者間에適切한調和와均衡을維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重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分野에適用될 수 있는統一된 룰(Rule)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말해서 原子力發電이 궁극적으로要求하는 安全性과 經濟性에對한 一貫된目標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分野에서遂行하여야 할機能은 비록 다르지만結局은同一한目標를追求하게되는것이며 그러한個個의機能을 모두綜合하였을때原子力發電이라고하는하나의產物이生成되기때문이다. 이는原子力發電所가計劃되고建設,竣工되는 어느 한 時點에서보았을때는물론이려니와앞으로의면將來를향해追求하여야할目標에있어서도마찬가지인것이다.

또한原子力發電事業은綜合的으로最適化되어야한다. 어떤分野가越等히뛰어나서先進技術水準에到達해있더라도또다른分野는落後되어있다면全体의으로는落後된技術水準을免하기어려울것이다. 그래서우리는分野間의均衡도維持해야만한다.

이와같이複雜多岐한機能을한군데로수렴하고全体가指向하여야 할目標를設定하는것이우리가解決하여야 할 가장important한當面課題인것이다.

그러면누가이러한役割을해주어야하는가? 물론그것은우선적으로政府가하여야 할일이다.

原子力發電에關한基本法인原子力法에서는原子力委員會가그러한機能을遂行하도록規定하고있으나지금까지는同委員會가그러한機能을充分히發揮하지못하였었다고하는것이솔직한指摘일것이다.

多幸스럽게도最近에와서이러한問題들이本格적으로檢討되고있고그에對한改善方案이具體적으로論議되고있음은매우고무적인事實이라고하겠다.

이時點에서우리가分明히하여야 할일은앞으

로構成될協議調整機構는그것이形式上으로는어떠한形態를取하는간에實質적으로는全体分野의意思가反映될수있도록하여分野間의意見差異를좁혀줄수있어야하고그에따라最適化된國家利益을追求할수있는政策方向을提示해줄수있어야한다.

다시말해서原子力에關한協議機構는一次的으로有關部處間의意見을綜合整理할수있는實質의인權限을가져야한다.協議機構를어느한部處의所屬機關으로하고다만그構成員으로서도는關係機關을參與시킬경우에는類似한效果를거둘수는있겠으나이경우에는協議機構의權限範圍에異意가있을수있으며,協議機構에서決定된事項의執行方法에있어多少의問題點이提起될수있다.

따라서同機構는아무래도모든行政部處를總括할수있는國務總理나副總理所屬下에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두번째로同協議機構는汎國家的으로組織되어야할것이다. 그構成員으로서는政府關聯機關은물론이고電力會社그리고設計用役會社,機資材製作會社 및建設施工業體등의產業界와關聯研究所및學界등全体分野의專門人士를끌고루包含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그構成員이過多할경우에는오히려逆現狀이야기될수도있으므로그점은특히유념하여야할것이다.

세번째로同協議機構는議決機能을가지도록함이좋을것으로思料된다.原子力의利用開發에關한基本政策을樹立確定하고,關係部處相互間의業務을協議調整할수있는最終審議議決機能을가지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는同機構가모든關係者와最高의專門家들로構成된集團으로그러한機能을充分히完遂할수있을것으로생각되며때문이다.

우리는上記와같은機能을가진協議機構를設置,運營함으로써原子力發電事業의合目的의이며效率의인推進을保障받을수있을것이다.

原子力發電事業은汎國家의in國民總意에의하여이루어져야한다. 조그마한部品하나의故障이나승무원의사소한失手가많은乘客을태운飛行기를추락시키는原因이될수도있다는點을우리는恒常銘心하여야한다.